#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0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 박용갑·한준호·강유정

한민수 • 박홍배 • 황정아

권칠승 • 문진석 • 장철민

문금주 • 이용우 • 추미애

조승래 • 박 정 • 박해철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살수장치나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옥내의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
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전기자
	동차 충전시설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살수장치나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옥내의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